

2024년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1.(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4-1회 정보제공청구 이의신청)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3건(안건번호 제2024-959호~106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959호는 캐릭터 도안을 무단 이용해 제작한 상품을 판매중인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 제품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복제물로 보이는 점, 판매를 통해 저작물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60호는 만화의 리뷰를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전체 저작물에 비하면 인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많지 않은 점, 해당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스토리에 대한 구체성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관리자가 추후 법적조치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4-961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62호~969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

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4-970호~979호는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목적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980호~1061호는 블로그 및 카페,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1회 정보제공청구 이의신청)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의 없음 확인함)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해당 스킨을 ●●●●●을 통해 판매한 후, 게임 내 선물하기 기능 또는 아파타 파일 스킨 추가 기능을 통해 결제자에게 발송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각 스킨의 가격은 화질과 캐릭터 별로 상이하나 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재된 블로그 '♣♣♣♣ ♣♣♣♣♣ ♣♣♣♣'은 '♣♣♣♣ ♣♣♣♣' 카테고리(45개)를 통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 캐릭터를 무단 이용한 수십종류의 스킨을 판매하고 있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로서 타인의 캐릭터저작물을 무단복제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소명자료만으로는 저작물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의 스킨 제작판매 자체를 곧바로 제한하기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적합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도록 계도함이 타당해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과거의 음악교육용 교구 사례의 경우 교구 부분은 게시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전체가 불법복제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지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됨. 게시물에 게시된 스킨들 자체가 불법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되

임에도, 해당 사례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와 법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 및 붙여넣기 한 것에 대해서만 시정을 권고할 것인지, 조금의 변형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불법 복제가 명확하다고 생각되면 시정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D 위원: 위원님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같이 권고하는 것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 사이의 정책적인 기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에도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거수로 의결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경고 가결 1인: E 위원)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익명 1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만화 '■■■ ■■■■■ ■■■■'의 일부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함께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만화 '■■■■ ■■■ ■■■'의 일부 장면을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사용된 만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1/3~1/4로 컷 분할한 이미지로,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스캔된 만화의 일부를 캡처하여 게시하고 있음.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2022. 1. 25.에 게시되었으나, 해당 만화의 한국어판 정식발매본은 2022. 9. 28.에 발매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인의 주장처럼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원저작물의 정식 발매 전 미번역된 불법스캔본을 사용하여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본문에 ♪♪♪ 블로그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별도의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화의 일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게시자가 이용한 이미지와 작성한 내용이 만화의 주요 내용을 스포일러하는 수준에 해당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출판저작물(만화)의 일부분만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는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이전 심의 사례 중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리뷰한 게시물의 사례가 있었는가.

- 이숙형 부장: 제2023-206회 3분과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만화 ‘♠♠♠♠♠♠♠♠♠♠’ 리뷰글의 경우,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부 이미지를 이용했지만, 게시자가 만화의 스토리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전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대부분으로 인용으로서 공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적어도 원저작물 자체를 대체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결하였음.
- C 위원: 저는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도 이전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분석보다는 이미지를 단순하게 나열한 것에 가까운 게시물인 것인가.
- 이숙형 부장: 그러함. 저작물의 이미지가 미번역판이기 때문에 해당 컷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인이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대다수로, 게시자의 분석이나 의견은 거의 게시되지 않음.
- B 위원: 그렇다면 게시글의 제목에서 스포일러를 담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숙형 부장: 게시글이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미발매된 만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경고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베른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지 않은 외국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을 해도 됨.
- A 위원: 이전에 음악 경고 가결건과 비교했을 때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르게 의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 C 위원: 음악 경고 가결건의 경우 음악의 전체분량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었음. 하지만 요약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미지를 다 지워버리고, 게시자가 설명한 내용이 만화의 요약이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또한,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불법 복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 시정권고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 D 위원: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저 저작물을 카피해서 자막 수준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2023-206회 사례보다는 저작권 침해에 가깝다고 생각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거수로 의결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경고 가결 2인: D 위원, E 위원)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 총 1건임.

(순번 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2024. 1. 6.부터 방영 중이며 ♣♣♣, ♠♠♠ ♠♠♠♠ 등을 통해 스트리밍 또한 가능함.

순번 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257건의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 내지 1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8건임.

(순번 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십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1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십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4번 내지 1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순번 2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게임 ‘○○ ○○ ○○○ ○○○ ○○○ ○○○’를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음.

순번 12번 내지 2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간접증거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전송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불법복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2번 내지 10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 내지 10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 내지 103번은 민원인들(실명 3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 웹하드에 게시된 영상(방송·영화)·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89건임.
(순번 3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만화 ‘♥♥♥’를 판매 중임.

(순번 9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만화 ‘○○○ ○○
○’을 판매 중임.

순번 22번 내지 103번의 89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0번 내지 1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 내지 1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95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960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96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962호~96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970호~97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980호~106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15.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